

2007. 12. 17(월) 10:00



142회 거창군의회(정례회)
제3차 본회의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〔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7. 11. 16.
- 제출자 : 거창군수(재무과)
- 회부일자 : 2007. 11. 20.
-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. 12. 04(제1차 총무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7 - 58호

2. 개정이유

2008. 1. 1.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, 7~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우리 군과 관련없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함
(안 제5조의2).

- 나.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의2).
- 연간종합소득 1,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,200만원으로 함
 -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함
- 다.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관(안 제9조의2).
- 「거창군세조례」 제32조(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)를 이관함
 - 토지분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함
- 라. 7~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(안 제15조의2).
- 전방조정자동차 : 승합차 세율로 과세하던 것을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에는 66/100을 경감하고, 2009년에는 33/100을 경감함
 -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
2008년에는 33/100을 경감하고, 2009년에는 16/100을 경감함
- 마.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
- 「도서관 및 도서진흥법」 ⇒ 「도서관법」 제31조 또는 제40조(안 제7조제6호)
 - 「과학관육성법」 ⇒ 「과학관육성법」 제6조(안 제7조제7호)
 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, 제42조제1항 ⇒ 제5조, 제7조부터 제9조, 제47조제1항(안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2008년도 「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」을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시·군에 통보된 것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